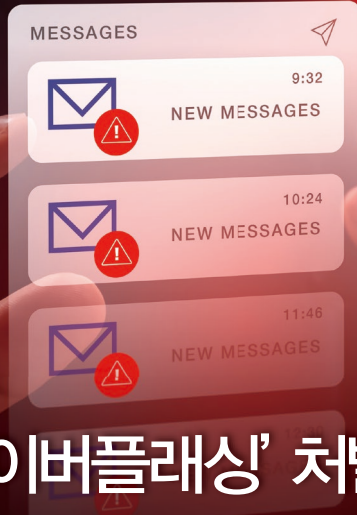




영국 ‘사이버플래싱’ 처벌규정 신설과 첫 유죄판결의 의의

최지현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개발학 석사과정

I. 들어가며

“화면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법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Hiding behind a screen does not hide you from the law)” – 해나 폰 다델젠, 영국 동부 검찰청 부수석 검사(2024)

2024년 3월, 잉글랜드 동부 사우스엔드 크라운 코트(Southend Crown Court)는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첫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영국 왕립 검찰청, 2024). 피고인 니콜라스 호크스(Nicholas Hawkes)는 15세 소녀와 성인 여성에게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그에게 총 66주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과 15년간의 성적 위해 방지 명령(Sexual Harm Prevention Order)을 병과하며,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다델젠 부수석 검사가 했던 ‘화면 뒤에 숨어 있다 해도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은 이번 판결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디지털 매체가 제공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더 이상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단호히 일깨운 것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노출이나 강제적 성적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사법 원칙을 확립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영국의 「2023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이하 「온라인 안전법」)이 「2003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이하 「성범죄법」)에 새로 삽입된 제 66A조(Section 66A)를 실제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사이버플래싱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명문화한 이 조항의 최초 적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법적 장치 안에서 다루는 체계가 비로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본 기고문은 영국에서 사이버플래싱이 어떻게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이것이 「온라인 안전법」과 첫 유죄 판결을 통해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 및 글로벌 대응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규율의 방향을 모색한다.

2. 사이버플래싱의 등장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의로 성적인 이미지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외설적인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블루투스나 에어드롭(AirDrop) 기능으로 기차, 버스, 강의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의 기기에 이미지가 전송되는 경우다(UK Parliament, 2022). 특히 후자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같은 지하철 칸에서 반응을 의도적으로 지켜보거나, 더 나아가 실제 성희롱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묵적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일상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놓여 있다. 초창기에는 블루투스가 탑재된 휴대전화 보급과 함께 대중교통에서 낯선 이에게 성적 이미지를 무작위로 전송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후 스마트폰 보급의 급속한 확대, 데이팅 앱(Tinder, Bumble, Hinge 등)의 일상화, 그리고 에어드롭 기능의 광범위한 사용이 결합되면서 피해 경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영국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 사건은 22,275건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Revenge Porn Helpline, 2024). 이는 단순히 사이버플래싱만을 지칭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배포 전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버플래싱 피해의 양상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데이팅 앱 Bumble의 자체 조사(2021)에 따르면 18~24세 여성의 48%가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고,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 YouGov가 실시한 조사(2024)에 따르면 40세 미만 여성의 36%가 데이트, 성적, 로맨틱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22%는 지난 12개월 안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40세 미만 여성의 12명 중 1명꼴(약 8%)로 지난 1년 동안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받은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사이버플래싱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광범위한 디지털 성범죄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사이버플래싱은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성범죄법」이나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의 공공외설죄 및 괴롭힘 조항으로 일부 대응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강제적 노출’이라는 특수성을 포괄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신고 과정에서 “사소한 장난을 왜 문제 삼느냐”는 반응에 부딪히기 일쑤였고, 경찰 또한 명확한 기소 기준 부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Victims’ Commissioner’s Research, 2022). 다델젠 부수석 검사 또한 “사이버플래싱은 피해자에게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나, 너무 자주 단순한 ‘농담’이나 ‘무해한 장난’으로 치부된다(All too often it can be dismissed as thoughtless ‘banter’ or a ‘harmless joke’)”고 말하며 이와 같은 현실을 지적했다(von Dadelzsen, 2024).

이처럼 사이버플래싱은 피해가 가볍다는 사회적 오해 속에 가려져 왔지만,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연구는 이러한 통념을 반박한다. 제시카 링로즈(Jessica Ringrose) 교수와 케이틀린 레그허(Kaitlyn Regehr) 박사는 특히 사이버플래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영국 청소년 문화를 집중 연구하며 사이버플래싱이 단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일회성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학업 환경 전반에 장기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위임을 강조한다(Ringrose & Regehr, 2019; 2023). 인터뷰에 응한 한 13세 여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라서 매일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가 했던 일이 계속 떠오른다”고 진술했다. 즉, 가해자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포레일 때, 피해자는 단순히 한순간의 불쾌감을 넘어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사이버플래싱이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김에도, 기존 법체계가 이를 독립된 범죄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3. 영국의 법제 변화와 첫 판결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운 것이 2023년 제정된 「2023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이다. 「온라인 안전법」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영국의 대표적 개혁 법률로,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과 기술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법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신종 디지털 범죄 유형의 독립적 규정 신설이다.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미디어 기업과 검색엔진, 메신저 플랫폼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였다. 플랫폼은 아동 성착취물, 테러리즘 선동, 증오 발언 등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삭제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 또는 1800만 파운드(한화 약 3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명시함으로써, 단순한 “자율 규제”가 아닌 강제적 책임 모델을 도입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사이버플래싱 규정은 이러한 「온라인 안전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을 단순 괴롭힘이나 장난의 범주가 아니라 형사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 결과 「온라인 안전법」은 「성범죄법」에 ‘제66A조(Section 66A, Sending etc photograph or film of genitals)’를 삽입하여, 사이버플래싱을 독립된 범죄로 신설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대적 의사소통 범죄(Modernising Communications Offences)」에 관한 법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법률위원회 형사법 담당 위원(Commissioner) 페니 루이스(Penney Lewis) 교수는, “이번 법이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이버플래싱을 오프라인 노출 범죄와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할 것(This offence will close loopholes in the existing law and ensure that cyberflashing is treated as seriously as in-person flashing)” 이라고 평가했다(Lewis, 2022).

[^{F1}66A Sending etc photograph or film of genitals

- (1) A person (A) who intentionally sends or gives a photograph or film of any person's genitals to another person (B) commits an offence if—
 - (a) A intends that B will see the genitals and be caused alarm, distress or humiliation, or
 - (b) A sends or gives such a photograph or film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and is reckless as to whether B will be caused alarm, distress or humiliation.
- (2) References to sending or giving such a photograph or film to another person include, in particular—
 - (a) sending it to another person by any means, electronically or otherwise,

- (b) showing it to another person, and
- (c) placing it for a particular person to find.
- (3) “Photograph” includes the negative as well as the positive version.
- (4) “Film” means a moving image.
- (5) References to a photograph or film also include—
 - (a) an image, whether made or altered by computer graphics or in any other way, which appears to be a photograph or film,
 - (b) a copy of a photograph, film or image within paragraph (a), and
 - (c) data stored by any means which is capable of conversion into a photograph, film or image within paragraph (a).
- (6)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e general limit in a magistrates’ court or a fine (or both);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F1} S. 66A inserted (E.W.) (31.1.2024) by Online Safety Act 2023 (c. 50), ss. 187, 240(1); S.I. 2024/31, reg. 2

제66A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군가가 고의로 타인에게 성기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 혹은 보여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둘째,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상대방이 불안, 고통, 굴욕을 느끼도록 의도했을 때, 혹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미지를 보내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무모하게 무시했을 때가 요건이 된다. 셋째, 단순한 디지털 사진뿐 아니라 합성 이미지, 영상, 심지어 특정인이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남겨둔 자료까지 모두 포함된다. 즉, 제66A조는 사이버플래싱을 ‘사진 및 영상 기반 노출 범죄’의 새로운 형태로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새로운 사이버플래싱 범죄 외에도,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세 가지 새로운 범죄를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사적 및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로운 온라인 의사소통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욕설이 담긴 이메일, 소셜미디어 게시물, 왓츠앱(Whatsapp) 메시지 전송, 그리고 웹사이트 댓글란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집단 괴롭힘(pile-on harassment)’ 등이 포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의 입법이 상대적으로 선제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사이버플래싱 자체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기보다

는 기존 형법상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또는 '모욕죄(criminal insult)'에 편입해 처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실제 기소율과 유죄 판결 비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사이버플래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입증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도 차별화된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이 '플랫폼 책임'을 제도화하는 거시적 틀을 제공한다면,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이를 넘어 개별 범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더 높다고 평가된다.

다만 영국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2010년부터 사이버플래싱을 형사범죄로 규정해 왔으며, 싱가포르도 2019년 「The Criminal Law Reform Act」를 제정하여 업스커팅과 리벤지 포르노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법 체계 국가들이 여전히 기존 법률의 해석과 확장을 통해 사이버플래싱을 다루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조치는 범죄 유형의 독립화와 처벌 수위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분명히 선도적인 의의를 가진다.

4. 사이버플래싱 유죄판결의 의의와 한계

다시 유죄 판결 사례로 돌아가 보자. 제66A조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사례가 바로 2024년 3월 선고된 니콜라스 호크스 사건이다. 니콜라스는 새로 규정된 사이버플래싱 범죄로 잉글랜드와 웨일스(England and Wales)에서 최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법 조항 신설을 넘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입증한 전환점이었다.

법적·정치적 맥락에서 보자면, 제66A조의 신설과 니콜라스의 유죄판결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 성범죄 체계의 주변부가 아닌 독립된 범죄로 격상시킴으로써, 법 집행과 처벌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둘째, 법률의 구조적 연결을 통해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포괄적 틀과 성범죄법이라는 구체적 조항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플래싱에 대한 규제는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통해 형사법 체계 안에 명확히 편입되었고, 「성범죄법」 제66A조라는 구체적 조항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물론 입법과 판례만으로 문제 해결이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니콜라스 사건은 중요한 선례이지만, 앞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 보장하기는 어렵다.

왜 처벌이 어려운가

첫째, 익명성의 장벽이다.

사이버플래싱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근거리 무선 연결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이미지 전송으로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겪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오프라인의 노출 범죄에서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이버플래싱은 가해자가 책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무력감을 남긴다.

둘째, ‘고의(intent)’ 중심의 입법 구조다.

현행 영국법은 사이버플래싱 처벌의 요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안, 고통,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고의(intent)’를 가졌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고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여성 안전 활동가이자 사이버플래싱 피해자인 카렌 와이브로(Karen Whybro)는 영국 ITV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선례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계속 유죄 판결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Whybro, 2024).

현재는 이미지를 보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이버플래싱의 대다수 사례에서는 그 고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범죄는 ‘의도’가 아니라 ‘동의’ 기준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So at the moment you have to prove an intent to cause distress or upset sending these images and we know that the vast majority of cyber flashing actually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prove that intent so really it would be much better if this was a consent-based crime rather than intent-based)

특히 첫 유죄 판결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범인이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드물게도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다. 이는 앞으로의 사건에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셋째, 피해자의 침묵과 낮은 신고율이다.

사이버플래싱 처벌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의 침묵이다. 피해자는 막막함, 사회적 낙인, “별것 아닌 일”이라는 주변의 인식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UCL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플래싱 피해자의 17%만이 SNS에 신고했으며, 부모나 학교에 알린 경우는 각각 5%와 2%에 불과하다 (UCL, 2024).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소율과 유죄 판결 건수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사이버플래싱이 법적 범죄로 규정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지만, 실제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다. 가해자 식별을 가로막는 익명성, 피해자 경험보다 가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한 입법 구조, 피해자 침묵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이 맞물려 처벌의 실효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향후 사이버플래싱에 대한 대응은 동의(consent) 기준의 강화, 피해자 신고 문화 확산, 수사 역량의 실질적 보강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법률이 선언한 원칙이 현실 속에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과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 역시 사이버플래싱을 무대응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음성, 글,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에어드롭, 블루투스, 메신저, SNS를 통해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 법체계 아래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역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전송 등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사이버플래싱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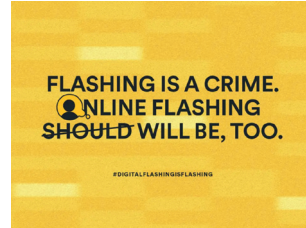
그러나 법적 구조의 차이는 분명하다.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성범죄법」에 제66A조를 신설하여, 사이버플래싱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한국은 ‘사이버플래싱’이라는 명칭을 따로 두지 않고, 기존 법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범죄 개념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수사기관이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범죄 성립 요건과 입증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담론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영국에서는 사이버플래싱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규정하는 인식이 제도화 과정을 거쳐 확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 교육기관 내 사이버플래싱 타겟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또한 형성되어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사이버플래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사실이 신고 과정에서 ‘작은 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낮은 신고율과 미비한 법 집행으로 이어진다. 제도적 대응력과 사회적 인식 속도의 격차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플래싱을 독립된 범주로 규율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플랫폼 차원의 노력

물론 사이버플래싱 문제가 입법만으로 충분하게 해결될 수는 없다. 법률은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의 틀을 제공하지만, 실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공간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기술적, 정책적 대응은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Bumble은 ‘동의 없는 음란물의 전자적 전송’을 범죄로 규정한 2019년 텍사스주 하원 법안 2789호(HB2789) 통과를 시작으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한 2022년 버지니아주 상원 법안 493호(SB493)와 일명 ‘FLASH Act’로 알려진, 동의없이 음란물을 전자적으로 수신한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2023년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54호(SB53) 등 여러 주에서 사이버플래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Bumble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CyberFlashing IsFlashing (디지털 노출도 노출이다) 캠페인을 펼치며 영국과 유럽 입법에도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냈다. 더 나아가, 앱 내 Private Detector라는 AI 기반 기능을 구현해, 채팅에서 나체 이미지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블러 처리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열람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이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이 기능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Instagram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이렉트 메시지 내 nude 이미지 자동 블러링 기능을 전 세계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으며, 해당 이미지를 수신한 사용자에게 “보기·차단·신고”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Bumble이 기술적 예방책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에 책임을 부여했다면, Instagram은 보호 중심 UX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경험을 즉각 차단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CBS, 2024).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한 예방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을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하려는 선제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사진 1〉 Bumble 캠페인 포스터
 “온라인 플래싱도 범죄가 될 것이다.”
 해석: “should”는 지워지고 “will”이 강조되어 있음 →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라는 확정적 선언
 출처: Bumble Official Website, 2024

7. 나가며

사이버플래싱의 범죄화와 첫 유죄 판결은 단순한 법률적 성취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성적 권리 침해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는 더 이상 사이버플래싱 행위가 개인적 불쾌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 정의와 피해자 권리 보장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 제약은 존재한다. 가해 고의의 입증 부담, 피해자의 침묵과 낮은 신고율, 그리고 익명성을 악용한 책임 회피 등은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나딘 도리스(Nadine Dorries) 영국 전 디지털 장관이 지적했듯, 기술은 삶을 연결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동시에, 괴롭힘과 학대를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Tech can also enable heinous behaviour from those who wish to abuse, harm and harass, Dorries, 2022). 이처럼 기술이 가진 양면성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입법적 규율과 플랫폼 차원의 정책적 책임이 결합할 때에만 피해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영국이 선택한 “개별 범죄화와 플랫폼 규율의 결합”이라는 이중 전략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새로운 법 조항의 도입을 넘어, 디지털 사회 전반의 성 문제 인식을 전환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다. 결국 사이버플래싱 문제의 해결은 법과 기술, 그리고 문화적 태도의 변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

참고 문헌

1. Bumble HQ. (2021). U.K. Government Accepts Bumble's Call to Make Cyberflashing a Crime. *The Buzz*. <https://bumble.com/the-buzz/bumble-uk-government-cyberflashing-law-crime>
2. CBS News. (2024, April 11). *Meta tests new auto-blur tool and other features on Instagram designed to fight sextortion* [Video].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instagram-sextortion-features-meta-block-nudity/?utm_source=chatgpt.com
3.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4, March 19). *Prison sentence in first cyberflashing case*. <https://www.cps.gov.uk/east-england/news/prison-sentence-first-cyberflashing-case>
4. GOV.UK. (2022, March 13). “Cyberflashing” to become a criminal offence [Press relea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cyberflashing-to-become-a-criminal-offence>
5. Nicola Fox Hamilton. (2023, September 16). Ireland AM - Cyberflashing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actHjtUF62c>
6. Ringrose, J. & Regehr, K. (2023). Recognizing and addressing how gender shapes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image-based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educational settings. *Journal of Social Issues*, 79(4), 1251–1281.
7. Smith, M. (2024, April 2). More than a third of women under 40 have received unsolicited sexual photos. *YouGov*. <https://yougov.co.uk/society/articles/49038-more-than-a-third-of-women-under-40-have-received-unsolicited-sexual-photos>
8. This Morning. (2024, March 20). *The Rise Of Cyberflashing and What Can Be Done To Stop It | This Morning*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U287vyEzaco>
9. Thompson, J., & Talwar, D. (2025, April 3) Revenge porn victim ‘constantly paranoid’ after topless images shared online. *BBC News*. <https://www.bbc.co.uk/news/articles/cg5q64rv349o.amp>
10. UK Government. (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Section 66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section/66A>
11. UK Government. (2023). *Online Safety Act 2023*, Part 1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part/10>